

# 소 장

원 고 1. 〇①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1995. ○.
   ○. 접수 제○○○○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가 19○○. ○. ○. 일제시대 때 사정을 받은 토지로 소외 망 ●●●의 소유였으며 소외 망 ●●● 및소외 망 ●●●의 상속인들이 관리하였습니다.
- 2. 그런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1995.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775호)에 따라 ○○시 ○○동
   ○○○번지 소외 박◆◆, 같은 동 ○○○번지 소외 김◆◆ 등을 연대보증인으

로 하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를 마쳤습니다.

-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 4. 또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가 19○○년 사 망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가 상속받았고, 소외 망 ◎◎◎는 199 ○. ○. ○.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5.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지방법원 ○○지원 1995. ○. ○. 접수 제○○○○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 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1. 갑 제2호증

1. 갑 제3호증

1. 갑 제4호증의 1, 2

1. 갑 제5호증의 1, 2

1. 갑 제6호증

구 토지대장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각 제적등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실확인서(허위보증)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소장부본

1. 송달료납부서

각 1통

1통

1통

2000. 0. 0.

위 원고 1. ○①○ (서명 또는 날인)

2. ○②○ (서명 또는 날인)

## ㅇㅇ지방법원 귀중



#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m². 끝.

			ō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조멸시효일람표) by www www www. www. www. www. www. www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ul> <li>•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li> <li>•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 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바, 이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임(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li> <li>•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합(대법원 2000. 10.</li> </ul>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 · ★ 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2)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말소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